

“노후를 즐겁고, 편안하게 모시는”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직원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건

직원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결과보고서 1부.
2. 교육자료 1부.
3. 수료증 1부. 끝.

유 락 원 재 가 노 인 복 지 센 터 장

담당자 최정화

국장 김운철

센터장

장원현

협조자시행 유락원재가19-005(2019. 01. 03)

우 790-934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523-2 / <http://www.youluck.co.kr>

전화 (054)276-1707 / fax (054)276-1706 / phyluck.naver.com / 공개

결 과 보 고 서

사업명	2018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일 시	2018년 10월 03일(수)~2018년 12월 31일(월)						
대상자	총 20명	센터장1명, 사회복지사1명, 영양보호사 18명					
교육방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예 산 명 세	계 획 예 산(단위:원)			집 행 예 산(단위:원)			
	구 분	산출근거	예산액	구 분	산출근거	집행액	지급방법
	합계			합계			
	소요예산 없음						
예산과목	-						
진행순서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학대신고의무자교육센터 접속하여 개인별 회원가입한다 ② 개인별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후 교육 실시한다 ③ 개인별 가정이나 센터에서 사이버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한다						
과정평가	◎ 교육의 질 향상과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 - 교육을 통한 아동학대의 이해와 아동학대 예방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교육내용 이해 및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사이버 교육에 전종사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컴퓨터 활용도가 낮은 종사자는 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총평가	-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이 무심히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어른이라면 체벌과 훈육의 기로에서 늘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 어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육과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훈육과 체벌은 무엇이 다른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길 54	시설장 또는 기관장 성명	장인현
교육일시	2018년 10월1일 ~ 2018년12월31일	교육장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교육대상	20명	이수인원	20명
이수시간	2시간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증빙자료>

※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시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을 첨부,
사이버교육 시 교육이수증 첨부

제 2018-C862899 호



수료증

소속 :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성명 : 남미자

위 사람은 2018.12.28 - 12.31 (2h)

실시한 제26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31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 2018-C862733 호



수료증

소속 :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성명 : 이은영

위 사람은 2018.12.28 - 12.31 (2h)

실시한 제26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31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 2018-C849020 호



수료증

소속 :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성명 : 박경희

위 사람은 2018.12.25 - 12.28 (2h)

실시한 제24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 2018-C848622 호



수료증

소속 :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성명 : 이수현

위 사람은 2018.12.25 - 12.28 (2h)

실시한 제24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 2018-C848460 호



수료증

소속 :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성명 : 김채숙

위 사람은 2018.12.25 - 12.28 (2h)

실시한 제24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 2018-C846500 호



수료증

소속 :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성명 : 김종식

위 사람은 2018.12.25 - 12.28 (2h)

실시한 제24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 2018-C837269 호



수료증

소속 :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성명 : 전영옥

위 사람은 2018.12.25 - 12.28 (2h)

실시한 제24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 2018-C837225 호



수료증

소속 :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성명 : 김갑남

위 사람은 2018.12.25 - 12.28 (2h)

실시한 제24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 2018-C837181 호



수료증

소속 :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성명 : 이귀임

위 사람은 2018.12.25 - 12.28 (2h)

실시한 제24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 2018-C840079 호



수료증

소속 :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성명 : 주효연

위 사람은 2018.12.25 - 12.28 (2h)

실시한 제24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 2018-C837633 호



수료증

소속 :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성명 : 하순자

위 사람은 2018.12.25 - 12.28 (2h)

실시한 제24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 2018-C834946 호



수료증

소속 :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성명 : 장명선

위 사람은 2018.12.25 - 12.28 (2h)

실시한 제24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5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 2018-C835081 호



수료증

소속 :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성명 : 김해선

위 사람은 2018.12.23 - 12.26 (2h)

실시한 제23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5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 2018-C835779 호



수료증

소속 :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성명 : 박정옥

위 사람은 2018.12.25 - 12.28 (2h)

실시한 제24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 2018-C837416 호



수료증

소속 :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성명 : 신영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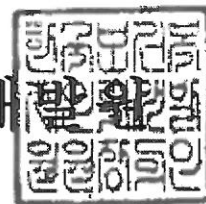
위 사람은 2018.12.25 - 12.28 (2h)

실시한 제24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 2018-C837496 호



수료증

소속 :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성명 : 이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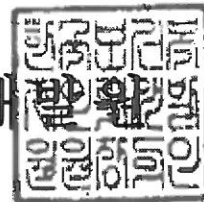
위 사람은 2018.12.25 - 12.28 (2h)

실시한 제24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 2018-C836886 호



수료증

소속 :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성명 : 박분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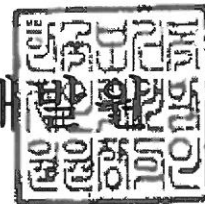
위 사람은 2018.12.25 - 12.28 (2h)

실시한 제24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 2018-C836873 호



수료증

소속 :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성명 : 최정화

위 사람은 2018.12.25 - 12.28 (2h)

실시한 제24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 2018-C835312 호



수료증

소속 :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성명 : 장미경

위 사람은 2018.12.24 - 12.25 (1h)

실시한 제37기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신고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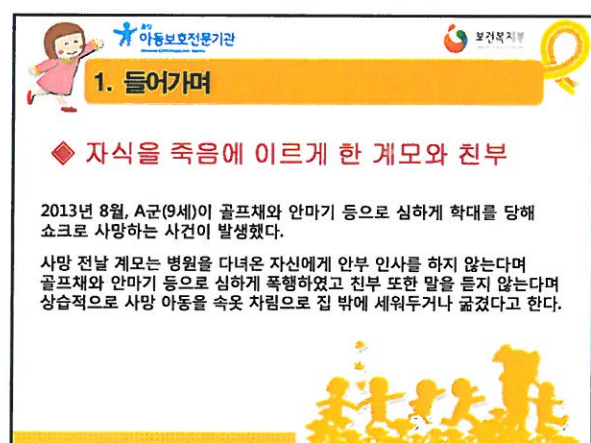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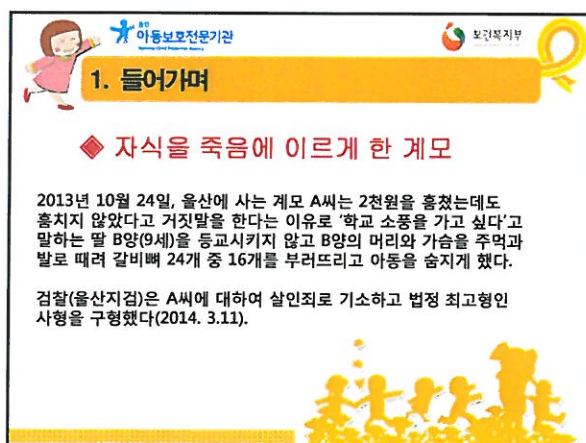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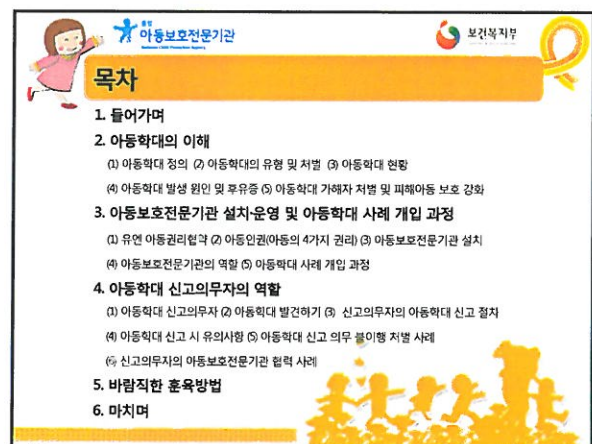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8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필수교육 참석명단

◆ 일 시 : 2018년12월 24일(월) 13:30~14:30

연 번	참석자명	서명 또는 인	연 번	참석자명	서명 또는 인
1	김 계량	김계량	13	장 인현	(장)
2	김 정숙	김정숙	14	하 명우	하명우
3	손 권옥	손권옥	15	김 부우	김부우
4	박 명숙	박명숙	16	박 신채	박신채
5	유 우복	유우복	17	박 훈자	박훈자
6	이 옥수	이옥수	18	이 광령	이광령
7	배 미순	배미순	19	서 은숙	서은숙
8	김 영옥	김영옥	20	장 영옥	장영옥
9	이 경숙	이경숙	21	최 은진	최은진
10	가 무환	가무환	22	가 용희	가용희
11	이 경애	(이)	23	김 운채	김운채
12	김 명옥	(김)	24	구 민정	구민정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1. 들어가며

◆ 어린이집에 맡겨진 뒤 뇌사에 빠진 6개월 영아

건강했던 생후 6개월 된 남자 아이가 어린이집에 맡겨진 뒤 두 시간 여 만에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검사 결과 특별한 외상은 없지만 뇌출혈과 왼쪽 두개골 골절, 양쪽 망막에 출혈이 발견되었다.

의료진은 '흔들린 아이 증후군(세이큰 베이비 신드롬, shaken baby syndrome)' 진단을 내렸다.



2.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1) 아동학대 정의 (아동복지법 제33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즉, 고등학생도 포함)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2)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도구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보호전문기관
Child Protection Specialist Agency



아동학대 (신체학대 사례)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팔꿈치로 밀치고 거칠게 흔드는 모습이 CCTV에 포착,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됨

→ 생후 36개월 이하(만 3세)의 영아에게 가해지는 모든 체벌은 신체학대에 해당

→ 때리고 상흔이 남는 것 뿐만 아니라 밀치거나 흔드는 것도 신체학대가 될 수 있음

사진 : SBS 뉴스(2014.1.8) 관악구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장면



아동보호전문기관
Child Protection Specialist Agency



(2)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혹적인 행위

- 언어적 폭력행위
- 정서적 위협
-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왕따시키는 행위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보호전문기관
Child Protection Specialist Agency



아동학대 (정서학대 사례)



고3 아들, 성적 강요 엄마 살해 후 8개월 방치

A군은 전국 모의고사에서 4,000등(상위 1%) 안에 드는 우수한 학생이었으나 "서울대 법대를 가라"는 엄마의 요구에 모의고사 성적표를 전국 62등으로 위조하여 모에게 보여주었다고 함.

하지만 모는 이에 "전국 1등을 하라"고 하였고 성적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A군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인방에 사체를 8개월 간 방치함.

➢ 정서적 학대 (비현실적인 기대, 강요)가 가져온 참극으로 정서학대의 후유증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사진 : SBS 뉴스(2011.11.24) 방위



아동보호전문기관
Child Protection Specialist Agency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간첩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동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성학대 사례)



지나가던 어린이 손등에 뽀뽀한 노인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 1,500만원

68살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11살 여자 어린이를 불러 세워 악수하자며 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했다. 놀라 도망가는 어린이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손에도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고 이 사건은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 1,500만원,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다.

사건 : SBS 뉴스(2011.11.24) 발췌

- 가벼워 보이는 신체접촉도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처벌대상임
- 어른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아동에게도 해서는 안 됨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방임, 유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의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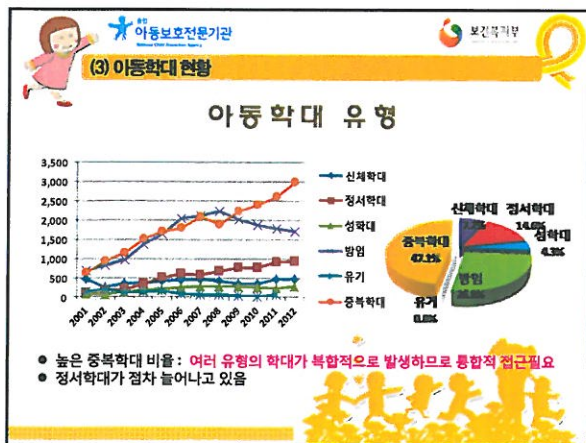
아동학대 (방임 사례)



고양시 세 자매 사건 (2013)

사건유래: SBS 뉴스

01 경기도 고양시의 한 다가구 주택 지하 단칸방에서 영양실조 상태의 세 자매가 발견됨	03 세 자매는 계도의 지시로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난방 없이 생활함(물리적 방임)
02 세 자매 모두 학교를 중퇴 (교육적 방임)	04 세 자매 모두 영양실조 증세를 보였고 둘째는 잦은 발작, 뼈에 염종, 막내는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임 (의료적 방임)



(4)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다!

2004	2010	2012
		
연쇄살인범 유영철 부는 음주, 폭력 모는 정서학대	부산 여중생 살해 김길태 부가 어린 시절부터 신체학대	나주 초등생 성폭행 고종석 불우한 성장과정

사진출처: KBS, 연합뉴스, 뉴스1

(4)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다!

<방치된 어린 시절, 그 분노가 범죄의 뿌리다(중앙일보, 2012.5.29)>

강력범죄자들의 어린 시절
단위%

이혼·불화 등
부모 문제로 고통
66.7

부모 문제
없음
33.3

우발적 동기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략)

이번 조사에서 강력범죄자들은 부모의 이혼·외도 불화·알코올 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성장기에 고통을 받은 경우가 66.7%에 달했다. 부적응 집단 따돌림 등 학창 시절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67.2%로 조사됐다.

(4)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구분	요인	결과
 학대자 / 아동 개인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악물 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중독 /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	- 학대로 인한 사망 - 아동에게 심은 상처 - 아동 자신을 무기자하게 느낌 - 아동의 신뢰가 파괴됨
 가족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 간 애착부족 등	- 비가해가족의 죄책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 저하 - 부모 및 형제와의 대립 증가 - 가출
 사회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 허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이 - 학교폭력 비행 자살이 증가함 - 약물 남용 및 중독 - 성매매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

(4)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아동학대는 아동이 가진 여러 특성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 가족, 사회 등의 주변 환경과의 역동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학대는 개인, 가족, 사회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됨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의료부

(학대 유형별 후유증)

신체 학대 · 정서 학대 · 방임 · 유기에 의한 후유증

✓ 파부결손 ✓ 화상 ✓ 골절 ✓ 안구출혈 ✓ 장기파열 ✓ 두뇌손상 ✓ 성장실패 ✓ 생리기능 변화 ✓ 사망 신체손상	✓ 중추신경계 손상 ✓ 지능 및 자아기능 손상 ✓ 감정조절기능 저하 및 이상 ✓ 자기개념 손상(무력감) ✓ 애착형성 붕괴 ✓ 행동조절능력 저하 ✓ 도래관계 붕괴 ✓ 자학적, 자기파괴 행동 ✓ 정신병리 심리 · 정서손상
--	---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의료부

(학대 유형별 후유증)

성 학대에 의한 후유증

✓ 아동 수면장애 ✓ 성적놀이 자위행위 ✓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행동 ✓ 퇴행행동 ✓ 분리불안 학령전기 신체 증상, 퇴행행동	✓ 수면장애, 야뇨증 ✓ 가출, 학업부진 ✓ 신경질 ✓ 부정적인 신체상 ✓ 교우관계 곤란 ✓ 재유시간 기피 ✓ 지나친 성에 대한 지식 ✓ 우울, 불안감, 해리 학령기 신체·정신 증상, 행동 장애	✓ 수면장애 ✓ 가출, 학업부진 ✓ 신경질 ✓ 잦은 싸움, 다툼 ✓ 교우관계 곤란 ✓ 부정적인 신체상 ✓ 약물남용, 불안감 ✓ 성에 대한 혼란, 임신 ✓ 자살 해리 청소년기 자아 손상, 반항 및 자해
---	---	---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의료부

(5)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대폭 강화 (2014. 1.28 공포, 2014. 9.29 시행)

1.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신설
(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학대중상해) 3년 이상 징역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시) 형량의 1/2 가중 처벌
2.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운영 금지
3. 중상해 및 상습학대행위자는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4. 신고의무자 제도 강화(과태료 500만 상당조정, 아이돌보미 등 직군 확대)
5. 현장조사권 강화 - 학대행위자 임시조치(**친권제한, 격리** 등) (최장 4개월)
6.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기존은 성폭력 사건만 혜택)
7.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3.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 운영 및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

아동보호전문기관

(1) 유엔 아동권리협약

유엔총회
인정함으로써 채택

대한민국
합약가입

- ◆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UN)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인 '인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함
- ◆ 현재 미국을 제외한 세계 193개국이 비준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가입국에서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

아동보호전문기관

(2) 아동인권 (아동의 4가지 권리)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생존권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호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발달권

자신의 나라와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참여권

아동학대는 아동권리에 대한 침해

아동보호전문기관

(3)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제22조. 국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전국 공통, 24시간 접수)

제45조. 국가(보건복지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등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아동복지법 제45조

-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대상 상담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홍보
- 피해아동 가정 사후관리
-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아동보조전문기관
Child Welfare Specialist Agency



보건복지부

(5)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

⑤

신고절차

- 24시간 신고전화 운영(1577-1391)
-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 후 현장조사 실시
- 특히, 36개월 이하 아동에 대한 사전접수 시 12시간 이내 현장조사 실시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이 가능한 한 아동 및 학대에 관한 많은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동	학대행위자	신고자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름 등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직업,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 	이름, 전화번호, 직업, 신고자 주소 등, 현재 주소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5)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

**현장조사
사태판정**

- 학대의심사건에 대해 아동, 행위자, 기타 관련인 면접조사 실시
-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을 긴급의 보호해야 할 경우 긴급격리보호 실시
-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 아동 및 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조치결정

- 피해아동: 가정 내 보호, 보호자로부터 격리보호, 의료기관 등 타 기관 의뢰
 - 격리 보호 시 학대피해아동전담보호소시설 또는 아동양육시설에 보호
- 학대행위자: 상담 및 교육, 고소·고발, 타 기관 의뢰

**서비스
제공**

- 피해아동: 상담,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고소·고발 지원 등
- 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심리치료,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가정 지원 등
- 기타 가족: 상담, 가족 치료, 가정 지원(경제, 가사지원) 등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A colorful illustration of six children playing in a field of white daisies. From left to right: a girl in a yellow shirt and blue headband, a boy in a green shirt and black cap, a girl in a pink shirt, a boy in a blue and white striped shirt and orange pants, a girl in a yellow shirt and blue cap, and a boy in a blue shirt and green pants. They are all running or jumping happily. In the background, there are two adults, a man and a woman, watching them. The scene is bright and cheerful.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민 누구나 신고 가능!!!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25조제1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25조제2항

신고의무자 직군은?(24개 직군)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초·중·고교 교사, 의료인과 의료기관장,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 보호시설 및 자활센터 장과 그 종사자, 의료기관 장 및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및 장 운영지원시설 장과 그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장과 그 종사자, 학원교수 등 종사자, 사립학교 이사장 등 종사자, 상공회 이사장 등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장과 그 종사자, 자정숙련 기술직 등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사설 상담소 종사자, 아동복지전문상담원 사회복지전문상담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과 그 종사자(22개 직군)

* 2014. 9. 29. 부처님오신날을 제외하고 아동 학대신고는 수요일부터 2개 직군 추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4. 9. 29.부터는 처벌이 강화되어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2) 아동학대 발견하기 (신체 학대 사례)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분의 상처
합워거나 손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




체벌 도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

의심스러운 경우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2) 아동학대 발견하기 (신체 학대 사례)

대부분의 화상 자국은 아동학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 (뜨거운 물, 다리미 자국 등)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의심스러운 경우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2) 아동학대 발견하기 (신체 학대 사례)

의사 A씨는 의식을 잃고 이송된 B군을 진찰하던 중 골절을 발견하였다. 의사 A씨는 B군의 부모에게 골절 원인을 물었으나 B군의 부모는 당황하며 B군이 혼자 놀다 넘어져 골절이 생긴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의사 A씨는 B군의 골절 부위를 엑스레이 촬영하고 이전에도 동일 부위의 골절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한 골절 상태도 단순히 넘어져 생긴 것이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로 신고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2) 아동학대 발견하기(정서 학대 사례)

발견이 어려워 아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할
귀가 거부, 우울, 좋지 못한 언행 사용 등

아동이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그림에 대하여 설명한 글에서 발견

“아빠가 너 같은 인간은
필요 없어 왜수야” 라고 하고
“XX” 같은 욕도 한다

폭언, 모욕, 김금, 심박한 비교 등을 하는 경우 모두 “정서 학대”

의심스러운 경우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2) 아동학대 발견하기 (정서학대 사례)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우울증으로 인해 등교 거부, 돌발행동 등 정신건강이 의심되며 사회복지관으로부터 상담 의뢰를 받은 B군(초등학교 3학년을 담당하는 등 캉캉 놀랄 이야기를 들었다.

B군의 부모는 평소 B군에게 인격을 비하하는 말과 욕설을 사용해 왔고 B군과 동생을 비교하며 가족 내에서 따돌렸다고 한다. 또한 가정 내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시 장롱 안에서 몇 시간씩 가두어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했고 옷을 다 벗겨서 밖으로 쫓아내고 몇 시간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도 한다고 했다.

A씨는 일반적인 훈육을 벗어난 아동학대로 생각되어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로 신고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2) 아동학대 발견하기 (신체, 정서학대 사례)

유치원 교사인 A씨는 원생 B군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깨달았다. 평소 활발하던 B군이 위축되어 있고 극심하게 귀가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B군이 하원하기 전에 시간을 내어 B군을 따로 상담했다.

A씨는 B군이 전날 집에서 엄마에게 심한 체벌과 함께 욕설을 듣고 밖으로 쫓겨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아동의 팔에서 효자손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멍 자국 여러 개를 발견하였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바로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로 신고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2) 아동학대 발견하기(성학대 사례)

연령대에 맞지 않는 성 지식과 행동
정소와 다른 행동, 좋아하던 것에 관심 없음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책 행동을 보임

대처 요령

-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하기
-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로 대하기
- 일상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
- 아동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피해아동을 직접 자세히 상담하지 말고 바로 신고

성학대 피해아동은
자신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의 성기 부분을
강조하기도 함

의심스러운 경우 신고!!!

(2) 아동학대 발견하기(성학대 사례)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온 여아 B를 진료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진료 전 아동의 부모는 목욕 도중 손이 미끄러져 아동의 성기에 손가락이 들어간 적이 있고, 아동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노는 것을 좋아해 상처가 발생했다며 진료사유를 말했으나 A씨는 진료 중 아동의 질 내에 상처가 깊고 질과 항문에 성학대가 의심되는 흔적들을 발견하였다.

A씨가 아동에게 상처가 발생한 원인을 물었으나 아동은 대답하지 않고 침울한 표정만 지었고, 이에 A씨는 아동학대로 생각되어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로 신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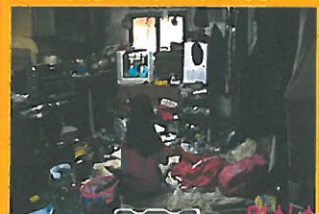


(2) 아동학대 발견하기(방임 사례)

위생상태 불량,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영양실조 등에 머릿니, 빈대 등이 있음
학교나 병원을 보내지 않는 것도 학대

아동의 위생상태나 의복, 냄새 등으로 비교적 쉽게 발견 가능

의심스러운 경우 신고!!!



(2) 아동학대 발견하기(방임 사례)

소방서 구급대원 A씨는 30대 여성이 부부싸움 중 남편이 휘두른 칼에 목부에 상처를 입어 출혈이 심하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구조를 위해 집에 들어간 순간 방 안에 악취가 진동했고 집안 곳곳에 쓰레기 봉지가 널려 있었으며 바퀴벌레 등 벌레를 목격했다.

A씨는 응급조치를 한 후 자녀로 보이는 B군과 C군의 지저분한 옷과 이 아동들이 또래보다 마르고 왜소한 모습에 눈길이 갔다.

A씨는 퇴근한 이후 아동들이 추운 날씨에 짧은 티셔츠를 입고 있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며 집 안에 쓰레기 등이 가득한 점이 마음에 걸려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로 신고하였다.



(3)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절차

- 피해아동에게 학대 의심징후를 발견 (상흔, 증언 등)
- 응급상황 시 피해아동의 안전 및 신병 확보 (선 조치 후 신고)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현장조사 및 사례 개입에 협조
- 사후 지원 및 서비스 협조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
(아동복지법 제41조 제1항)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의복지부

(4) 아동학대 신고 시 유의사항

-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한다. (얼굴이 나오도록)
- 아동에게 큰일이 난 것처럼 대해 불안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는다.
-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진술 오염의 위험이 있음. 진술이 오염되면 증거로 불채택)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의복지부

(5) 아동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 처벌 사례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시가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주의를 끌고 있다.

부산시는 어린이집에 수개월간 방임된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난달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6일 납부가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중략)

친모가 아동을 맡겨둔 채 수개월간 연락이 끊겼고 원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서 계속 보육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동이 방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의복지부

(5) 아동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 처벌 사례

'00 아동 사망 사건' 연루 00대학교병원 의사 등 입건, 변사 의심 없이 사망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 적용 (데일리메디) 이정환 기자 = 지난 4월 온라인을 달군 '00 아동 사망 사건'에 연루된 친모 및 00대학교병원 의사 등이 무더기 처벌을 받게 됐다.

사망 아동 시신이 변사로 의심됨에도 해당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00대학교병원 의사 A씨와 해당 의료법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의사 A씨는 변사 의심에도 불구하고 "목욕탕에서 넘어졌다"는 부모의 말만 믿은 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망 원인을 '급성외인성 뇌출혈'로, 사망 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이 밖에도 사망한 아동의 시신을 보지도 않고 허위 시신검안서를 작성한 의사 B씨는 허위검안서 작성 혐의로, 이 검안서를 화장장에 내고 시신 운반을 도운 장의자랑 운전자 C씨도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의복지부

(6) 신고의무자의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 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친부에게 성학대를 당한 아동을 상담하던 중, 아동의 불안한 상황에서 진술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편소에 아동과 친분이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진술조력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A씨는 아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아동을 달래주면서 아동의 잘못이 아니니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고 안심시켰다. 이후 아동이 안정감을 느끼고 사실을 진술하여 해당 내용이 증거로 채택되어 친부가 처벌받을 수 있었다.

평소 아동과 친분이 있는 신고의무자가 아동의 진술을 도와줌!!!



아동보호전문기관
Korea Child Protection Agency



보건복지부

5. 바람직한 훈육방법
혹시 내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사례(아동·청소년 보육교직원)

경찰. 13개월 생 '학대' 어린이집 교사 수사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서울 00경찰서는 13개월 남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어린이집 교사를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13개월 된 남자아이의 얼굴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몸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보육교사 A씨가 아이의 얼굴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몸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 사진은 참고용으로 해당 사진과 관련이 없습니다.

체벌 뿐 아니라 장시간 서있게 하기, 가두기, 따돌리기, 몸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행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됨



아동보호전문기관
Korea Child Protection Agency



보건복지부

5. 바람직한 훈육방법
혹시 내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사례(초·중·고교 교사)

육설과 폭언, 공포분위기 조성한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5학년 담임 A씨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교탁을 발로 차서 넘어트리고 장구 등의 악기를 집어 던져 파손시키며 'XX' 등의 육설을 사용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교사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행동을 정서학대로 판정하였다.



폭언, 공포분위기 조성 또한 아동학대에 해당됨



아동보호전문기관
Korea Child Protection Agency



보건복지부

5. 바람직한 훈육방법
혹시 내가...? 신고의무자 학대 사례(보육원 생활지도교사)

(의정부=뉴스1) 이상훈 기자 =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중학생을 혼계한답시고 둔기로 마구 때리고 땅에 묻기까지 한 막장 보육원 중사자들에게 법원이 처벌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A(12)군을 야산으로 끌고 가 나무에 묶어 둔기로 때리고 구렁이에 욕만 남긴 채 파묻어 방치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보육원 교사 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및 고지 3년을 명했다.



본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훈계를 빙자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징역형



아동보호전문기관
Korea Child Protection Agency



보건복지부

5. 바람직한 훈육 방법
- 연령별 아동발달 이해하기

❖ 1-3세

- 신발을 혼자 신거나 벗을 수 있음
- 공을 칠 수 있음
- 주의력이 오래 지속되지 못함
- 어른의 행동을 모방함
- 감정이나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함
- 친구들과 잘 어울림

아동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반응하기
어른의 행동을 잘 모방하며 주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일관성 있는 반응과 인내심이 필요함



아동학대 예방
- 발달단계에 따른 훈육방법



5. 바람직한 훈육 방법

- 연령별 아동발달 이해하기

❖ 3-5세

- 운동능력이 향상되어 활동량이 많아짐
- 작은 물건들을 다루는 능력이 향상됨
- 현실과 상상을 혼동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함
- 호기심이 많아짐
- 꾸중을 들으면 토라짐
- 다른 사람과 노는 것을 좋아함

아동학대 예방
- 발달단계에 따른 훈육방법

•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활동적이어서 사고가 종종 발생하므로 할 수 있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함

• 꾸중을 들으면 토라지기 시작하므로 꾸짖기보다는 올바른 행동에 대한 모범 예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5. 바람직한 훈육 방법

- 연령별 아동발달 이해하기

❖ 8세~13세

- 자아가 형성되며 정체성을 확립하려 함
- 사회적 질서를 배워가는 시기
- 친구와 집단활동에 많은 중심을 둠
- 전성적 기질이 극대화 됨

아동학대 예방
- 발달단계에 따른 훈육방법

- 아동이 문제 행동을 할 경우 장기적인 문제 행동 교정 목표를 설정한다.
- 따뜻함(사랑, 인정)과 체계(기대, 지침)를 제공한다.
- 아동의 감정과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한다. (활동적, 독립적, 행동이 산만하거나 느림 등)
- 아동이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상과 벌칙을 실시
- 교사의 감정 관리도 중요!! (심호흡, 여가 활동 등)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5. 바람직한 훈육 방법

- 연령별 아동발달 이해하기

❖ 청소년기(14세~18세)

- 성인과 같은 수준의 사고를 시작함
- 심리적 불안정, 위험행동
- 이성관계에 중시
- 성인이라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함

아동학대 예방
- 발달단계에 따른 훈육방법

- 아동의 신념을 존중해주고 교사의 의견을 말한다.
- 이해를 바라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요나 압력은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
- 작은 약속, 당장 성취가 가능한 일들로 보상을 실시한다.
- 아동과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6. 마치며... 다시 한번! 아동학대 신고 절차

- 피해아동에게 학대 의심징후를 발견 (상흔, 증언 등)
- 응급상황 시 피해아동의 안전 및 신병 확보 (선 조치 후 신고)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현장조사 및 사례개입에 협조
- 사후 지원 및 서비스 협조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
(아동복지법 제23조 제3항)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일상구원)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